

3. 國土利用管理法施行令中 改正令(案)立法豫告

건설교통부공고 제1997-49호 1997. 6. 3

주요 골자

- 가. 공장, 물류시설등의 입지가 용이하도록 준도시지역에 산업촉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농지전용, 산림형질변경 절차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, 산업촉진지구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규정
- 나. 농어촌지역에 공동주택이 무질서하게 건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은 준도시지역에서 300호 이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고, 지침으로 운영되던 용적율(200% 이하)제한을 시행령에 규정
- 다.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에서의 건축물은 도시지역내 전용주거지역 수준인 용적율 100% 이하로 제한하고, 숙박·음식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
- 라. 과학관, 폐광의 폐수처리시설을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을 받지않고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.
- 마.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장, 군수와의 협의로 토지거래허가를 같음하도록 하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사립학교교원연금공단을 추가함.

바. 외국인(법인)이 「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권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토지취득허가를 받은 경우, 공공사업과 관련한 잔여토지를 취득하는 경우, 국세 및 지방세 등을 물납하는 경우에는 토지 거래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함.

사. 도지사에게 위임한 동일한 시·군·구안에서의 토지거래 허가·신고구역 지정권한에 그 지정의 해제권한까지 추가 위임함.

개 정 이 유

기업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시의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, 준농림지역내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며, 불투명하거나 실효성 없는 규정을 정리하여 경제행정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주택희보